

RESEARCH ARTICLE

# Proposing Key Policies to Boost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 Analysis Using FGI and AHP Methodologies

Yumi Lee<sup>1</sup>, Donggi Hong<sup>2</sup>

<sup>1</sup>Director, IP R&D Support Divisio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gency, Republic of Korea

<sup>2</sup>Director, IP Business Development Offic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gency,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Yumi Lee ([ym7610no1@gmail.com](mailto:ym7610no1@gmail.com))

##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policy measures to vitalize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IP) finance market by analyzing the systems of Korea, the U.S., Japan, and China. Domestic limitations and global success factors are defined, and nine key policy tasks prioritized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re derived. Unlike previous studies, findings are strengthened through expert insights and policy urgency and importance quantified to objectively identify priority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a stepwise policy roadmap to advance Korea's IP finance ecosystem is presented.

## KEYWORDS

Intellectual Property (IP), Finance, Structuring, Focus Group Interview (FGI),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ax Credit, Capital Market Accessibility, Securitization, Liquidity, IP Insurance, Credit Enhancement, Funding, Government initiative, Private initiative, Securities

## Open Access

**Received:** October 16, 2025

**Revised:** November 16, 2025

**Accepted:** March 06, 2026

**Published:** March 30, 2026

**Funding:** The author received manuscript fees for this article from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2026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원저

# FGI 및 AHP 방법론을 활용한 지식재산 금융관련 국내외 현황 및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제안

이유미<sup>1</sup>, 홍동기<sup>2</sup>

<sup>1</sup>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전략지원본부 실장

<sup>2</sup>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 실장

교신저자: 이유미 (ym7610no1@gmail.com)

## 차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2.1. 금융중개이론과 정보의 비대칭론
  - 2.2. 산업정책이론과 IP 금융활성화
  - 2.3. IP 금융의 개념과 유형
  - 2.4. IP 금융 구조화
  - 2.5. IP 신용보강 제도의 이론적 고찰
  - 2.6. IP 세무·회계 처리의 특성
3. 연구방법
  - 3.1. 분석방법론
  - 3.2. 연구설계
4. 사례분석 및 연구결과
  - 4.1. 국내·외 사례분석
  - 4.2. 국내·외 사례연구 및 기타 선행문헌을 통한 정책 Factor 도출
  - 4.3. 정성분석(FGI) 결과 종합
  - 4.4. 정량분석(AHP) 결과 종합
5.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중 4개국의 IP 금융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제도의 한계와 해외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더불어,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변용한 9개의 핵심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 인터뷰(FGI)와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AHP) 기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단순한 '정책적 이슈의 제안'에서 더 나아가 전문가들의 주관적 의견을 통해 내용을 보강하고 '시급성'과 '중요도'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가중치를 분석하여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을 객관적으로 식별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이러한 정량적 우선순위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국내 IP 금융 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 주제어

지식재산, 금융, 구조화, FGI(집단심층면접),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 세액공제, 자본시장 접근성, 증권화, 유동화, IP보험, 신용보강

## 1. 서론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 기업 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로 부상<sup>1)</sup>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무형자산의 경제적 비중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S&P 500 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9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Ocean Tomo).

그러나 코스닥 기업의 경우 같은 해 기준 무형자산의 기업 가치 비중이 57%로, 미국의 약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 NIKKEI 225(32%)와 상해 CSI 300(44%) 대비 양호한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IP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 체계가 미흡하고 가치평가·회계·세무처리 기준도 불충분하여 혁신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이 제대로 금융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기업 기준 무형자산의 가치가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여전히 무형자산의 대표격인 지식재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IP 자체의 가치에 기반하여 담보로서 IP가치를 인정받거나, IP를 바탕으로 한 투자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지만, 한국은 정부 주도 자금을 활용한 제한적 IP담보대출, IP 직접투자 등의 형식을 통해 기업의 신용등급이 다소 충분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치를 유지하여 무형자산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sup>2)</sup>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IP 담보대출 기업 1,608개사를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BB 등급 이하) 대출이 74.4%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기업이 IP 금융을 통해 평균 3~4%대인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2% 내외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한국의 IP 금융 생태계 부진 이슈는 정부 주도의 투자가 기업 자금 조달의 사실상 유일한 해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 IP투자 효과는 R&D에 편중되어 브랜드·소프트웨어·콘텐츠 등 다양한 무형자산의 시장가치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부각된 디지털 콘텐츠·바이오 기술 분야의 성장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들은 국가 경제성장의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가로막고, 글로벌 IP 금융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위협하므로,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세제·보증·공시 인센티브 도입, 디지털 자산화 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제언이 시급히 요구된다.

<표1 관련 연구의 문헌적 고찰>

연도	논문명 (발행처)	저자	주요내용
2013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3호)	이성상	미국과 이스라엘 사례를 바탕으로 거래가능한 특허권 창출, IP투자용 모험자본 증대, 거래 및 회수시장 구축 필요성 주장
2013	IP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진 IP 금융 모델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3호)	서경, 권영관	IP유동화 플랫폼(미국, 오션토모)과 유사한 금융 플랫폼을 선진 IP 금융 모델로 제시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금융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

1) 박용린, “무형자산의 부상과 기업금융 수요의 변화(이슈보고서 18-13)”, 자본시장연구원, 2018, 1-22면.

2) 2025. 9. 30.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바 있으나, 지식재산처 승격 이전의 내용은 모두 특허청으로 기재하였음.

2014	지식재산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분석을 통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	한창희	관련문헌 및 전문가 사례조사를 통해 IP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우선 도출하고, 이를 계층화 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분석
2018	무형자산의 부상과 기업금융 수요의 변화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무형자산 축적이 기업의 자금조달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부채비율이 낮고 내부자금 의존도가 높으며 재무적 제약도가 높다는 결과 도출.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제시
2021	지식재산(IP) 증가 추세에 따른 국내 IP 금융 현황 및 과제 (자본시장포커스 2021-04호)	홍지연	국내 IP 금융 규모가 2020년 2조원을 돌파한 현황 분석. IP 금융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치평가 신뢰성 제고와 공시 투명성 확보 필요성 강조. 현행 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 가치 반영 한계 지적
2023	국제개발 협력 측면에서 지식재산(IP)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3호)	박유선	지식재산 담보권 설정을 위한 법적근거마련, IP 금융 모델 다양화 및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주장
2024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본연구 보고서 24-07)	윤상하 외	무형자산의 증가하는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조직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금융업의 디지털화를 촉진 등 필요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미 10년 전부터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특히청 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되고, 대내외적으로 기술적 압박과 지정학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현재, 그간 연구된 내용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행문헌에 대한 고찰, 지난 10년간 국내 IP 금융의 현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요소를 도출하고, 관련 공공기관, 금융, 세무,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중 IP 금융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사 중인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반영하며, 도출된 정책 요소들 사이의 우선순위(가중치)를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장기 IP 금융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2.1. 금융중개이론과 정보의 비대칭론

최근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직접적인 금융 활동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 중 대표인 특허가 지닌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 특허는 무형자산으로서 정밀한 가치평가가 어렵고,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내부인과 외부인 간 정보의 격차가 크며, 시장성과 수익성 예측이 불확실하다. 이러한 특성은 본질적으로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정보 비대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Akerlof(1970)<sup>3)</sup>는 정보 비대칭이 역선택 문제를 초래하여 시장 붕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Ramakrishnan, Ram T. S. & Thakor, Anjan V.(1984)<sup>4)</sup>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와

3) George A.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84 No.3(1970), pp. 488-500.

4) Ram T. S. Ramakrishnan & Anjan V. Thakor, "Information Reliability and a Theory of Financial

금융중개를 연결하여, 정보 비대칭과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존재할 때 금융중개가 이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중개이론은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IP 금융 활성화 정책 수립의 학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 2.2. 산업정책이론과 IP 금융활성화

국내 금융시장과 선진국의 금융시장 현황을 비교할 때, 여전히 정부 개입의 요소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산업정책이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Joseph E. Stiglitz(1994)<sup>5)</sup>는 빠르게 성장하는 동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 안정성과 금융 기관의 지급 능력,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정부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Mariana Mazzucato(2013)<sup>6)</sup>는 국가가 가장 혁신적인 위험 감수자이자 신기술 투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민간 기술 분야에서 국가 주도 혁신 사례를 실증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위험을 사회화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서 산업정책이론은 정부 개입의 정당성과 수단을 제공하며, 특히 기술혁신과 무형자산 금융화 과정에서 정책수단 설계에 필수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 2.3. IP 금융의 개념과 유형

지식재산(IP)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저작권을 포괄하며, 대표적 무형 자산으로서 기업 경쟁력<sup>7)</sup>과 현금흐름<sup>8)</sup> 생성의 기반이 된다. 저작권 중심의 콘텐츠 산업은 이미 신탁관리기관과 전문업체를 통해 저작권료를 징수·배분하고 안정적 현금흐름을 금융상품화(예, 뮤직카우<sup>9)</sup>)했으나, 산업재산권 기반 IP 금융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이 제품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일종의 거래 가능한 완성품 개념이 아니므로 장기간 가치 실현을 전제로 하며 출원 후 최대 20년의 경제적 수명과 특허 무효심판·침해소송 등 위험에 노출된다. IP 금융 생태계에서 IP를 통해 수익화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IP담보대출<sup>10)</sup>, IP증권화<sup>11)</sup>, IP투자<sup>12)</sup>로 구분된다. IP담보대출은 2018년 이후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아래 제도적 기반이 마련<sup>13)</sup>되었으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2개 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의 기술에 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중심의 보증이 아

Intermediation”,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51 No.3(1984), pp. 415-432.

5) Joseph E. Stiglitz, “The Role of the State in Financial Markets”, *Proceedings of the World Bank Annual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93, 1994*, pp. 19-61.

6) Mariana Mazzucato, *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ublic vs. Private Sector Myths*, Anthem Press, 2013, pp. 1-201.

7) 정희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비재무정보 공시 활성화의 필요성”, *자본시장포커스(2025-15호)*, 자본시장연구원, 2025, 7면.

8) 임소진 외 9인, “지식재산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성과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5, 23면.

9) 남시은·박찬경, “뮤직카우를 통한 음원 조각투자: 창작자의 재투자를 위한 투자 민주화 또는 문화 생산의 금융-플랫폼화”,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5, 54면.

10) 전우정, “지식재산에 대한 담보권설정과 자산유동화 - 특허권을 대출에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괄담보”, *「한국민사법학회」*, 제105호(2023), 267-323면.

11) 손수정, “지식재산의 증권화(Securitization)를 위한 탐색연구(정책연구 2007-0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102면.

12) 이지연, “유동화를 통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주간금융브리프」*, 30권 8호(2021), 3-9면.

13)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5. 23일)」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2018. 12. 11.)

년, 기업 대표의 신용도 등 지재권 이외의 부분에 무게를 두는 미완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IP 증권화는 현재 기준으로 흥국증권 사례가 최초이자 마지막 사례로 존재하며, 이외의 국내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사례는 로열티 기반 투자와 IP 증권화의 혼합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의 Leapfrogging 사례<sup>14)</sup>를 벤치마킹 삼아, 화폐에서 모바일결제로의 선도적 도약을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도 IP자산의 토큰화를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여 IP 금융의 전통적 개념에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된 WEF 2025 보고서<sup>15)</sup>에 따르면, “자산 토큰화를 금융 시스템의 전략적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Ante, L.(2020)<sup>16)</sup> 및 IMF에서 발행한 IMF Fintech Notes(2025)<sup>17)</sup> 등 국제 선행연구에서도 자산 토큰화가 금융 시스템의 필수 진화임을 일관되게 증명하고 있다.

## 2.4. IP 금융 구조화

IP 금융 구조화란 기초자산인 IP에 자산유동화, 담보대출, 증권화, 로열티 투자 등 다양한 금융 기법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제거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투자 신뢰도를 높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IP 금융 구조화의 필요성과 의의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다각도로 검증되었으며, WIPO Magazine에 실린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An introduction”(WIPO, 2008)는 IP 금융이 미래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익을 현재 가치로 전환함으로써 기술기업과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R&D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로열티의 유동화”는 SPV(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기구) 설립과 보험, 보증, 신용보강 기법의 도입을 통해 IP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흡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이미 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다양한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다루게 될 로열티 유동화 관련 실증 연구에 대한 문헌적 고찰은 다음과 같다. Odasso(2010)와 Kramer(2005)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래 로열티 흐름을 SPV(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기구)에 귀속시켜 즉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는 모델을 제시하여 미래 로열티 수익의 현재가치 전환을 실증하였고, Watanabe(2004)와 Solomon(2014)는 SPV 설립, 신용보강(보험·보증·신용트렌치) 및 자산분리(True sale) 기법을 통해 투자자·대출자의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음을 실증함으로써 리스크 분산·흡수 메커니즘을 확립하였다. 아울러 Rahmah(2017)와 Abramovitch(2025)는 유동화된 IP-ABS가 투자자 간 매매·헤지 가능성을 부여하여 전체 시장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Solomon과 Odasso는 성공적 구조화를 위해 회계·세무·법률·감정평가 전문가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유동화 관련 기준·절차 표준화가 필수적임을 제언하여 전문가 협업과 표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14) Pengfei Han & Zhu Wang, “Technology Adoption and Leapfrogging: Racing for Mobile Payments”, SSRN Electronic Journal, 2021, pp. 1-70.

15) World Economic Forum (WEF), “Asset Tokenization in Financial Markets: The Next Generation of Value Exchange (Insight Report)”, WEF, 2025, pp. 1-63.

16) Lennart Ante & Ingo Fiedler, “Cheap Signals in Security Token Offerings (STOs)”, *Quantitative Finance and Economics*, Vol.4 No.4(2020), pp. 608-639.

17) Itai Agur et al., “Tokenization and Financial Market Inefficienci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5, pp. 1-33.

<표2 관련 연구의 문헌적 고찰>

연도	논문명 (발행처)	저자	주요내용
2004	Intellectual Property as Securitized Assets (SSRN Working Paper)	H. Watanabe	일본·미국 사례를 통해 특허·저작권 로열티 클레임을 자산유동화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검토하고, 유동화 한계와 구조화 요건을 제시
2005	Securitis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in the US Market (Law Office Publication)	W. J. Kramer	예일대 HIV치료제 특허를 담보로 한 1억 달러 규모 로열티 유동화 사례 분석, SPV 설립 방식과 로열티 흐름의 신탁구조를 상세히 설명
2010	Essay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atent-Backed Financ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à degli Studi di Bergamo)	Maria Cristina Odasso	약품 특허의 미래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유동화 거래 가능성을 생존분석·퍼지 논리·사례연구·계량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SPV 구조 및 신용강화 기법을 제시
2014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D. Solomon	IP-ABS 구조 설계, 트랜치 구성, 법률·회계·신용보강 수단을 통합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리스크 분산 메커니즘을 설명
2017	Promoting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for Financing Creative Industries (Journal of Financial Innovation, Vol.3)	M. Rahmah	음악·영상·디자인 로열티를 기초로 하는 증권화 모델을 검토하고, 저작권·상표·특허의 로열티 유동화 적용 가능성을 비교 분석
2025	Monetizing the Melody: The Billion-Dollar Evolution of Music Royalty Securitization (Gowling WLG Insight)	Susan H. Abramovitch & Structured Finance Group,	데이비드 보워(1997), 롭 스투어트·아이언 메이든(2009) 등 주요 음악 로열티 유동화 거래를 사례로 제시하며, SPV 기반 신탁 구조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상세히 설명

## 2.5. IP 신용보강 제도의 이론적 고찰

외부 보강 기법은 공공·민간 부문의 신용보강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원금·이자 보증(Guarantee)은 자산담보대출 단계에서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축소하여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둘째, IP 담보대출 보험 및 소송보험(IP litigation insurance) 등 보험(Insurance)은 IP 분쟁 등과 같은 리스크를 보전하여 투자자의 리스크를 경감시키며, 이는 앞서 제시한 선행문헌(Watanabe, 2004, 문헌 고찰 참조)에서 강조한 바 있다. 셋째, CDS 유사 구조의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은 신용사건 발생 시 페이아웃을 제공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내·외부 보강은 신용스프레드 축소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하고,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투자자 풀을 확대하며, 상품 표준화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전체 IP 금융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능과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우려, 포트폴리오 내 기초자산 상관관계로 인한 손실 확산 가능성, 과도한 트랜치 및 보강 장치 도입에 따른 구조 복잡성 증대는 접근성을 저해하는 한계로 지적된다.<sup>18)</sup>

18) Dov Solomon & Miriam Marcowitz-Bitton,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33(2015), pp. 125-179.

<표3 관련 연구의 문헌적 고찰>

연도	논문명 (발행처)	저자	주요내용
2004	Intellectual Property as Securitized Assets (SSRN)	Watanabe	미국 일본 IP-ABS 사례 비교 연구 구조화 의의: 보험·보증·True sale 기법을 통합해 리스크 분산 메커니즘 확립
2005	Securitis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in the US Market (Law Office Publication)	Kramer	예일대 HIV치료제 특허 로열티 유동화 사례 분석 활용 방안: 서브오디네이션을 통한 트랜치 계층화 및 신용보강 기법 설명
2010	Essay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Patent-Backed Financing” (Università degli Studi di Bergamo)	Maria Cristina Odasso	SPV에 로열티 흐름을 귀속시켜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 전환 모델 제시 구조화 의의: 오버콜래터럴과 준비금 계정을 통해 자금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2014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Solomon	IP-ABS 트랜치 구조 및 신용보강 통합 모범사례 제시 활용 방안: 내부·외부 보강 수단(오버콜래터럴, CDS 등) 결합 모델 제시
2017	Promoting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for Financing Creative Industries (J. Financial Innovation)	Rahmah	음악·영상 로열티 유동화 증권화 모델 제안 구조화 의의: 2차 시장에서의 투자자 매매·헤지 가능성 확보 방안 강조
2018	무형자산의 부상과 기업금융 수요의 변화 (한국자본시장연구원, KMCI)	박용린	무형자산 지수 개발 및 부채비율 변화 분석 활용 방안: 회계·세무·법률 전문가 협업 체계 및 제도적 지원 필요성 제언
2025	Monetizing the Melody: The Billion-Dollar Evolution of Music Royalty Securitization (Gowling WLG Insight)	Abramovitch	보우소니 음악 로열티 유동화 주요 사례 분석 활용 방안: 기관투자자 참여와 신용스프레드 축소 효과 입증

## 2.6. IP 세무·회계 처리의 특성

한국의 IP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동일한 체계로 규정되어 있다. 무형자산으로서의 IP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IP 회계 처리의 핵심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K-IFRS, 기업회계기준서<sup>19)</sup> 제1038호-무형자산(51~67))과 외부로부터 취득한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자체개발 IP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연구단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단계의 지출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 개발비의 자산화 요건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도, 사용·판매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의 제시, 충분한 자원의 이용가능성,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취득한 IP는 구입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하며, 취득 후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한 재평가는 금지된다.

주부식·김민철(2007)<sup>20)</sup>의 연구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기업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19)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K-IFRS, <<https://kifrs.com>>, 검색일: 2025. 10. 15.

20) 주부식·김민철,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8집(2007), 343-362면.

기업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실증되었다. 특히, 유형자산보다 기업가치와 무형자산 간 관계를 더 높은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현대 기업에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체개발 IP의 경우 연구개발 투입비용과 실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 간의 괴리가 클 수 있으며,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 경제적 파급력과 가치가 변동되지만 재평가 금지와 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원가기준 회계처리는 IP의 실질적 경제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sup>21)</sup>

### 3. 연구방법

#### 3.1. 분석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FGI와 AHP를 결합한 “Mixed-Methods”를 적용하였다. FGI(Focus Group Interview)는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 심층적인 질적 데이터를 획득하는 기법으로, 정책·마케팅·사회과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Krueger와 Casey(2015)는 “Focus Group Methodology<sup>22)</sup>”(Sage Publications)에서 FGI의 최적 참여자 수를 6~8명으로 제안하였으며, 각 그룹이 소규모일수록 심층 토론과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진다고 설명<sup>23)</sup>한다. 또한, Morgan(1998)의 연구(“Planning Focus Groups,” Sage)에서는 4~12명 범위가 적정하며, 1~2시간 분량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본 연구는 이들 권고에 따라 참가자를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금융과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를 1:1로 구성하고, 공통적으로 현재 IP 금융 관련 종사자이거나 종사 이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책 간의 우선순위를 가중치 계산에 따라 설정하고, FGI를 통해 발굴된 정책 요인 간 특장점을 AHP 설문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3계층(목표-평가기준-대안) 구조로 배치하고, 전문가 집단에게 1~9점 척도의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는 AHP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중치 산출 및 CI-CR 검증을 거쳐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질적 탐색과 정량적 분석의 강점을 통합한 신뢰도 높은 의사결정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핵심 분석 방법론으로 설정하였다.

#### 3.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출한 정책제언의 실현가능성을 보강하고 시행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정성적(Qualitative) 방법과 정량적(Quantitative) 방법 2단계로 설계하였다.

#### [정성적(Qualitative) 방법]

1차적으로 문헌 연구 및 실태 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책을 정리하고, 정책 Factor에 대한 정의와 배경 등을 설명하였으며, 현장 도입 장벽을 줄이기 위해 학계, 금융계 그리고 정책 분야 전문

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Expert Consultative Group on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WIPO, 2023, pp. 1-21.

22) Richard A. Krueger & Mary Anne Casey, *Focus Group: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5th Edition, Sage Publishing, 2015, pp. 77-102; Rana Muhammad Dilshad & Muhammad Ijaz Latif, “Focus Group Interview as a Tool for Qualitative Research: An Analysis”, *Pakist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33 No.1(2013), pp. 191-198; Garry Anderson & Nancy Arsenault, *Fundamentals of Educational Research*, Routledge, 2005, pp. 1-266.

23) 서효원,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활용한 학부생의 학술적 보고서 작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101집(2023), 119-163면 중 45면 참조.

가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또한 FGI를 실시할 때 처음에는 이슈의 타 이틀만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개방형 질문 방법으로 인터뷰를 하였으며(라운드 1, 개념 정리),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사전에 만들어둔 질문의 틀을 일부 활용(사전에 준비한 핵심질문 활용)하고, 일부는 답변에 대해 유연하게 변경(사전에 준비한 보조 질문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반구조화 질문 방법을 활용하여, 도출한 정책 이슈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점, 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 잠재적 리스크 등 다각적인 쟁점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활용하였다(라운드 2~3, 상관관계 검토 및 심층 토론).

이와 같이, 단순 인터뷰가 아닌 다단계 인터뷰 과정은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 초기 정책 이슈들을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수정·보완하고, 실제 정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들을 세분화하여 최종 분석의 타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다.

### [정량적(Quantitative) 방법]

정량적 방법에서는 FGI를 통해 구체화되고 정제된 최종 정책 과제들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AHP) 기법을 활용한다. AHP는 1970년대 초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Thomas L. Saaty 교수에 의해 개발된 다기준 의사결정방법론이다. Saaty(1980)는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서 이 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립<sup>24)</sup>하였으며, 이는 미국무부의 무기통제 및 비무장부서에서 전략적 정치 및 외교 분야의 협상과 tradeoff를 다루기 위한 10여 년간의 연구 결과물에서 도출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9점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요소의 수가  $7 \pm 2$ 개로 제한된다는 Miller(1956)<sup>25)</sup>의 연구와 쌍대 비교에 있어서 9점 척도가 최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선행 논문 및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로 AHP를 정량분석 방법론으로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이다. 첫째, AHP는 정성적 판단의 정량화 능력을 갖고 있어, 이슈 간 쌍대비교를 통해 의사결정자들의 선호를 수치로 제시할 수 있다. 조승국(2006)<sup>26)</sup>은 퍼지-계층화 분석법을 적용한 서울시의 쾌적성(Amenity)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가중치 도출을 AHP로 실시하였다. 둘째, 복잡한 정책 문제의 구조화 능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 분석 방안 연구(2000)<sup>27)</sup>에서 “복잡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써 AHP를 제안하였으며, “정량적인 평가 기준과 정성적 평가기준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각 정책 과제의 상대적 가중치는 어떤 정책부터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여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24) Thomas L. Saaty & E. Erdener, “A New Approach to Performance Measurement -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Design Methods and Theories*, Vol.13 No.2(1979), pp. 64-72.

25) George A. Miller,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some limits on our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63(1956), pp. 81-97.

26) 조승국·이주석, “퍼지-계층화 분석법을 적용한 서울시의 쾌적성(Amenity)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가중치 도출”, 『서울도시연구』, 제7권 제1호(2006), 1-15면.

27) 박현 외 3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0, 1-20면.

## 4. 사례분석 및 연구결과

### 4.1. 국내·외 사례분석

#### 4.1.1. 한국

본 사례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 IP 금융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며,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사례는 IP 금융 생태계의 발전 형태 순서에 따라 고찰하고자 한다.

국내 IP 금융산업은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담보를 기반으로 한 IP 담보대출 → 로열티 기반 IP 증권화 시도 → 회수지원기구 순서로 발전해 왔다. 먼저, 한국산업은행(KDB)은 2013년 9월 국내 최초로 지식재산(IP)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도입하여 IP 금융 시장의 문을 열었다. 당시 특허청과 MOU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IP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부실 증가라는 부정적인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국정감사에서 허성무 의원은 IP 담보대출의 부실률이 3%에 육박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P 담보대출 규모는 2019년 6,259억 원, 2020년 1조 4,874억 원, 2021년 1조 9,315억 원, 2022년 2조 1,929억 원, 2023년 2조 3,226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회수지원 대상 IP 담보대출 잔액은 2020년 3,652억 원, 2021년 1조 780억 원, 2022년 1조 6,017억 원, 2023년 1조 8,861억 원, 2024년 2조 3,143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2024년 이후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급증한 데 기인했을 뿐 아니라, 고금리 기조에서 기술 기반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IP 담보대출 부실은 단순히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외부 환경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확인된다.

<표4 KDB IP 담보대출 운영 현황<sup>28)</sup>>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3월)
담보 IP 매입 개수(개)	5	29	54	68	151
IP 담보대출 부실률(%)	1.07	1.56	1.05	3.71	3.95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산업은행보다 앞선 2006년, 국내 최초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IP 보증제도를 도입했으며, 2022년 말까지 누적 3조 6천억 원 규모로 IP 금융의 양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전체 IP 금융 10조원 중 42.6%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이다.

<표5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 보증 신규공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IP보증* 신규공급	2,160	5,478	2,122	5,654	2,291	6,898	2,412	6,836

\*IP보증: IP가치보증, IP등급보증, IP인수보증 포함

기술보증기금은 IP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술전문가 인력을 활용하여 IP보증을 지속 확대·유지

28) 김예솔, 「IP담보대출 부실률 4%…재산권 매입 늘린 특허청도 ‘진땀’」, 서울경제, 2025. 9. 3자.

하고 있다. 전문성에 기반한 리스크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여, 보증 심사 단계에서 리스크 변수별 가중치를 반영하는 정교한 신용 보강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축적된 특허 빅데이터와 시장-거래 데이터를 결합해 AI 기반 평가 알고리즘을 시스템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이 안정적 운영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제도 연계 강화, 중소기업벤처부의 강력한 재정 지원 역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의 또 다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사례로는 2019년 출시된 ‘아이디어브릿지-흥국 IP 로열티 유동화 전문사모펀드 1호’ 사례가 있다. 이 펀드는 총 113억 5천만 원 규모로 한국투자증권 PB망을 통해 판매되었으며, 국내 특허권 개발 전문기업인 M&K홀딩스가 보유한 동영상 관련 세계적 표준특허(HEVC, H.265)를 담보로 하여 향후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로열티) 수입을 수익원으로 하는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펀드는 정부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민간이 주도하여 만든 최초의 IP 투자 금융상품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흥국증권이 딜소싱을 담당하고, 신한캐피탈이 기관투자자로 참여하였으며,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의 IP 펀드운용 노하우가 결합된 협업 모델을 통해 완성된 ‘순수 민간의 결합’으로, 자발적으로 생성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IP 투자 펀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내 민간 IP 투자 펀드의 확산은 여전히 제한적<sup>29)</sup>이다.

이러한 민간 주도 IP 투자 펀드에도 불구하고 IP 담보대출의 리스크 부담이 금융기관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장애로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회수지원기구’를 출범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경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IP회수지원기구 공식 출범(‘20.2))는 은행의 담보 IP 회수 업무를 전담하며, 매년 공동 재원을 마련하여 채무불이행 시 IP를 공동 매입, 이후 라이선싱 등 수익화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2023년 4월 첫째각’ 성공사례와 민간투자회사인 유암코와 연계한 ‘IP 담보대출 회생기업 최초 투자유치(60억원)성공’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20년 출범 이후 총 186개 담보 IP를 매입하여 46개를 수익화하는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은행의 회수 부담을 경감하고 IP 담보대출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6 특허청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 현황<sup>30)</sup>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보증연계투자 예산	37.5	92.65	37.5	7.75	16.86	22.86	215.12

\*출처: 특허청

이와 같은 현황은 국내 IP 금융이 정책적 지원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선진국과 견줄 만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작용할 것이다.

#### 4.1.2. 해외 사례 연구

해외 사례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의 성공적인 운영 현황과 사례를 파악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29) 김태현, 「IP 금융 10조 시대? 직접투자 펀드 1.7% 불과...제도개선 시급」, 머니투데이, 2024. 7. 9자.

30) 특허청 예산서 바탕 재구성.

#### 4.1.2.1. 미국

미국은 2023년 무형자산 투자 절대 수준에서 1위를 차지하며, 2위 프랑스 대비 6배 높은 수준(약 6.9조 USD 중 미국 비중이 압도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글로벌 무형자산 투자는 1995년 2.9조 USD에서 2023년 6.9조 USD로 실질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유형자산 투자는 2.7조 USD에서 4.66조 USD로 73% 증가에 그치고 있어 무형자산의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무형자산 투자 선진국이다.(WIPO, 2025)<sup>31)</sup>. 이러한 성장은 미국 내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특허 담보대출, 상표 및 저작권 유동화 등 세분화된 시장과 수요 확대에 연계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들은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시장 참여자의 다양성과 상품의 다양성이 미국 IP 금융 시장 확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7 미국 IP 금융 시장 주요 Player>

구분	민간 IP 금융社	주요 내용
대형 상업은행	Bank of America	연간 1,000건 이상의 IP 담보대출 거래를 관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200명 이상의 IP 가치평가 전문가를 고용
	JPMorgan Chase	IP 담보대출 포트폴리오에서 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 기업들을 지원
	Silicon Valley Bank	2015-2021년 기간 중 가장 많은 특허 담보대출 거래를 처리한 은행 중 하나
전문 IP 금융기관	Avon River Ventures	IP 담보대출 전문기관으로 담보보험정책(Collateral Insurance Policy)을 통해 200만~5,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
	Bluelron IP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담보대출 전문기관으로, 특허를 담보로 200만~5,000만 달러 이상의 대출을 제공
	Soryn IP Capital	가치 있는 지식재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 대학, 법무법인에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
NPE 펀드	Intellectual Ventures(IV)	세계 최대 규모의 IP 전문 투자회사로, 약 9만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 자회사 네트워크와 제휴해 IP 인큐베이션(신규 발명) 및 특허 매입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축→ 로열티 라이선스·소송 등을 통해 수익화 ※ IV의 2025년 연간 추정 매출은 4,200만 달러
	Acacia Research Corporation	공격적 특허 assertion에 특화된 PAE(Patent Assertion Entity) 기업·개인으로부터 특허를 매입→ 대상 기업에 라이선스 수수료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Wi-Fi 6 표준 필수 특허 및 기술집약적 특허 매입) ※ 연간 예상 매출은 2,920만 달러
	RPX Corporation	방어적 NPE(Defensive Patent Aggregator) 모델의 선두주자로, 회원사(주로 기술기업)들이 연회비를 내고 참여(20만 개 이상의 특허 자산과 권리를 방어적으로 인수) RPX가 특허를 선제 매입해 회원사에 대한 assertion 위험을 감소시키고, 매입 특허 중 일부를 재라이선스해 수익을 얻음 ※ 연간 예상 매출은 3,320만 달러
	Ocean Tomo LLC	IP Merchant Bank를 표방하며, IP 경매(Auction)와 IP 거래소(IPX)를 운영 특허·저작권·상표권 등을 유동화하는 자본시장 상품을 개발하고, NPE 자금 조달·거래 중개, 가치평가·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 ※ 연간 예상 매출은 2,040만 달러

3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World Intangible Investment Highlights", 2025, pp. 19.

Unified Patents (Litigation Investment Entity)	소송 펀딩(Litigation Financing) 형태의 NPE 모델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NPE의 특허 소송 비용 합의를 후원. 성공 보수 기 반으로 운용 2024년 상반기 NPE 소송 건수 상위 투자 엔티티로 Jeffrey M. Gross 등에 이어 주요 활동을 보임
---	---

이와 같이 IP 금융분야 산업이 발전하고, 관련 player들이 다양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IP 금융 신뢰성 보강구조에 있다. 미국에서는 IP 담보대출의 신용위험을 보험으로 전가하는 IP 담보대출보험 모델이 발전해 왔다. 이는 모기지보험과 유사한 구조로, 금융기관이 특허·상표·저작권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험사가 인수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담보 회수 실패 위험을 크게 낮추고 혁신기업은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험사·금융기관·IP 보유자 모두가 수익 기회를 갖게 되는 이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Avon River Ventures가 있다. 이 회사는 특허·상표·저작권을 담보로 2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면서, 보험사와 공동으로 담보보험(Collateral Insurance Policy)을 설계·운용하였다. 그결과공개된 거래 건에 따르면, 기술 기업 10곳에 IP 담보대출, 채권(Structured IP Backed ABL) 등의 형태로 총 7,000만 달러 이상의 IP 담보대출을 실행<sup>32)</sup>했으며, 연간 약 1,040만 달러의 수익을 실현했다.

<표8 IP 보험 주요 Player>

IP 보험 및 금융 서비스 社	주요 내용
Marsh	IP 보험 금융(IP-Insured Financing)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IP 자산에 보험 보호막을 씌워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 ※ 연간 수익: \$15.4 billion(154억 달러)
Aon	지식재산 가치평가 도구와 담보보호보험(collateral protection policy)을 활용해, IP 담보대출(가치의 90~100%까지 보장) Insurance: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소송 비용, 손해배상, 계약상 면책 조항 이행 책임 등 전 영역의 IP 분쟁 리스크를 보장 ※ 연간 수익: \$12.1 billion(121억 달러)
Liberty Specialty Markets	침해 방어, 무효화 대응, 계약상 배상 책임, 영업 중단 손실 등을 보장하며 최대 2,500만 달러 한도를 제공 ※ 연간 수익: \$4.651 billion(46.51억 달러)

IP 금융 신용 보강은 기초 자산인 지식재산(IP)의 현금흐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확립하고 증권권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미국 IP 금융 시장에서는 이러한 신용 보강이 구조화 상품 발행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4.1.2.2. 일본

일본의 IP 금융의 핵심 키워드는 “정부 주도”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청(FSA:Financial Services Agency)·내각부(CAO:Cabinet Office)·특허청(JPO)이 주축이 되어 IP 금융 모델을 설계·추진<sup>33)</sup>했으며, 2021년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32) Avon River Ventures, “Recent Transactions [최근 거래 내역(공개건 기준)]”, Avon River Ventures, <<https://avonriverventures.com/recent-transactions/>>, 검색일: 2025. 10. 15.

33)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2021(지식재산추진계획 2021)”, 知的財産戦略本

Code)<sup>34</sup>) 개정을 통해 IP 투자 및 활용 촉진 메커니즘을 공식화했다. 개정된 코드에서는 단순 보유를 넘어 IP의 상업적 활용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기업에 요구함으로써, 무형자산 보고를 기업 목표와 연계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도입된 IP 공시제도<sup>35</sup>)는 주요 상장기업 200여 곳이 IP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투자-지식재산-이익’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IP가 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한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IP 금융 신용 보강 메커니즘으로 NEXI 보증·보험<sup>36</sup>), DBJ(일본정책투자은행)의 IP 보증·지원 펀드<sup>37</sup>), 특허청 인증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 보고서<sup>38</sup>) 활용 등이 있다. 예컨대 DBJ는 공인된 IP평가기관 20여 곳에 의뢰한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담보 가치를 산정하고 보증 승인을 통해 지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이와 같이, 일본은 정부 주도의 제도 설계와 민간 주도의 운용 사례가 조화롭게 결합된 IP 금융 생태계를 구축했다. 다양한 신용 보강 및 구조화 모델을 통해 IP 금융 시장을 고도화하였으며, 이는 미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특히 “IP 공시”와 “IP 보험인 NEXI”는 일본 IP 금융의 핵심 요소로, 이 두 제도는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중요한 모델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이 가장 빠르게 답습할 수 있는 최적의 선진 IP 금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제도적 기반과 민간 실무가 효과적으로 결합된 선진 사례를 통해 IP 금융 생태계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4.1.2.3. 중국

중국은 방대한 내수시장과 정부 주도의 제도 설계를 바탕으로 IP 금융을 빠르게 고도화해왔다.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과 ‘비전 2035’에서 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 중국국가지식재산국(CNIPA)이 협업하여 IP 담보대출 가이드라인, IP 보험 규정, IP 증권화 시범사업을 주관하도록 명시했다. 동시에 금융기관이 IP 보증 대출, 기술 보험 등 과학기술 금융상품을 개발·제공하도록 장려하여, 중앙·지방 정부 예산과 성·시 단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된 정책 생태계를 구축했다.

중국의 IP 금융 생태계 규모를 살펴보면, 특허·상표 담보 금융은 중국은행(Bank of China),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등 상업은행의 IP 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CNY 854억(USD118억, 2023) 규모 성장하여 약 37,000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部,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210713.pdf>>, 검색일: 2025. 10. 15.
- 34) 일본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Japan’s Corporate Governance Code [Final Proposal]”, FSA, <[https://www.fsa.go.jp/en/laws\\_regulations/pc\\_corporate\\_governance.html](https://www.fsa.go.jp/en/laws_regulations/pc_corporate_governance.html)>, 검색일: 2025. 10. 15; Japan Exchange Group (JPX), “Japan’s Corporate Governance Code”, Tokyo Stock Exchange, 2021, <<https://www.jpx.co.jp/english/news/1020/b5b4pj0000046kxj-att/b5b4pj0000046i0c.pdf>>, 검색일: 2025. 10. 15.
- 35)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와 일본 특허청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한국의 DART와 비슷(EDINET); 일본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EDINET (Electronic Disclosure for Investors’ NETwork)”, EDINET, <<https://disclosure2.edinet-fsa.go.jp/WEEK0010.aspx>>, 검색일: 2025. 10. 15; Tokyo Stock Exchange (TSE), “Timely Disclosure Information”, Japan Exchange Group <<https://www2.jpx.co.jp/tseHpFront/JJK020010Action.do?Show=Show>>, 검색일: 2025. 10. 15.
- 36)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NEXI), “知的財産権等ライセンス保険 (知財保険) [지적재산권등 라이선스 보험(지재보험) 브로슈어]”, NEXI, <[https://www.nexi.go.jp/product/booklet/pdf/pr11\\_01.pdf](https://www.nexi.go.jp/product/booklet/pdf/pr11_01.pdf)>, 검색일: 2025. 10. 15.
- 37) Development Bank of Japan (DBJ), “日本初の本格的な「知財開発ファンド」を創設 ~IPBの特許解析システムを活用し、有望・休眠特許の事業化を促進~[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지재 개발 펀드」를 창설: IPB의 특허 해석 시스템을 활용해, 유망·휴면 특허의 사업화를 촉진]”, DBJ 日本政策投資銀行, <<https://www.dbj.jp/news/archive/rel2006/0822.html>>, 작성일: 2006. 8. 22.
- 38) Japan Patent Office (JPO), “知財ビジネス評価書 (基礎項目編) 作成の手引き[令和6年3月改訂版][지식재산 비즈니스 평가서 (기초 항목 편) 작성 가이드]”, JPO, <<https://www.jpo.go.jp/support/chusho/document/kinyu-katsuyo/tebiki.pdf>>, 검색일: 2025. 10. 15.

(WIPO, 2025).

민간 부문에서는 PICC(中國人民保險公司)가 22개 성(省)·99개 도시에서 IP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31,000개 기업의 50,000여 건의 IP를 보장했다. 또한, CEIC(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 등 공공기관과 텐센트뮤직, 화웨이를 포함한 주요 벤처캐피탈이 협력하여 IP ABS<sup>39)</sup>, IP 보험, IP 펀드를 설계·운용함으로써 제도 설계와 시장조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완성했다. 또한, PICC(Property and Casualty: 중국인민보험공사)와 CEIC(수출신용보험 전문 공공기관)가 주도한 IP담보대출보험은 금융기관은 IP 담보대출 리스크를 경감하고 혁신기업은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며, IP 보유자·금융기관·보험사 모두가 수익 기회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9 중국의 성공 사례>

구분	주요 내용
글로벌 소송 방어	[Baidu, Inc.] CEIC의 IP 소송 집행비용 보험을 통해 Baidu는 변호사비·증거수집비 전액 지원으로 적극적 방어 전략 구사 → 합의금 500만 달러 절감 및 판결 인용 확률 제고
R&D 자금 조달 안정화	[Suzhou GreenTech Co., Ltd.] PICC의 IP 담보대출 연계 보험으로 공상은행에서 8,000만 위안 대출 실행 → 매출 성장 및 해외 수출 계약 체결

## 4.2. 국내외 사례연구 및 기타 선행문헌을 통한 정책 Factor 도출

앞서 분석한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사례연구 외에 WIPO에서 발표한 보고서(2025)<sup>40)</sup> 등 다양한 선행문헌을 통해 IP 금융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관련 사례 및 국가별 IP 금융 생태계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가 다뤄야 할 정책 Factor를 도출하였다.

<그림1 정책 Factor 도출 과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5년 보고서 「Moving IP Finance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에서 IP 금융의 5가지 주요 도전과제를 제시하며, 이는 혁신기업 자금조달, 금융신뢰, 정책 효율성 등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한다. 한국은 이들 과제를 모두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IP를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적 한계와 낮은 유동성이 주요 장애물이다. 이에 따라, 자산 유동화법 등 법체계 개정(Factor1), IP 보험 및 신용보강 체계(Factor8, 9), 국가주도 펀드(Factor2)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중국의 대규모 IP 펀드, 캐나다의 IP 담보 펀드 등 해외 사례

39) IP ABS(지식재산 자산유동화증권)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쉽게 설명하면, 기업이나 자산 보유자가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내는 IP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진정한 매매)한 뒤, SPC는 그 IP 자산이 만들어내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ABS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투자자들은 이 ABS를 사서 원리금과 배당금을 받는 구조로, IP ABS는 지식재산을 금융시장에 효율적으로 연계해 기업의 자금 조달 및 투자자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대표적인 고도화된 자산유동화 구조임.

40)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Moving IP Finance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WIPO Reference RN2025-7EN, WIPO, 2025, pp. 1-20.

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표10 WIPO에서 제시한 5대 주요 해결 과제 및 관련 사례>

No	주요 과제	관련 사례
1	IP 자산 가치 평가 신뢰성 확보	* IVS 210 (무형자산 평가 표준): IVSC가 발행한 국제 표준으로 무형자산 가치평가의 방법론과 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기준 * 싱가포르: Chartered Valuer and Appraiser (CVA) 프로그램 * 자메이카: JIPO 주도 IP 평가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2	금융기관의 IP 이해 부족	* 싱가포르: Singapore IP Strategy 2030 (SIPS 2030) - Intangible Disclosure Framework (IDF): IP자산 공시 * 일본: Corporate Governance Code
3	규제기관의 IP 담보 미인정	* 영국: HSBC UK는 상한의 고정장 기업 대출 제공(2022~), NatWest IP 담보대출 프로그램 개시(2024.~)
4	높은 거래 비용	* 한국: 가치평가 비용 보조 * 영국: SME대상 감사 결과에 따라 지분 투자 보조 * 터키: 평가 및 컨설팅 통합 서비스(TRKSMD)
5	IP 자산의 낮은 유동성	* 한국: IP 담보대출 보증 제공 * 싱가포르: IPOS 관리하에 정부가 대출손실의 80% 부담 * 미국: AON등 민간보험사의 담보 보호 보험

이상과 같이 국내외 현황과 WIPO 보고서 등을 종합한 결과, 한국이 IP 금융을 주류화하기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4가지 정책 요소가 도출되었다. 민간 IP 펀드 활성화를 위한 출자자 세액공제 도입(Factor3),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한 IP 공시 의무화(Factor4), SPAC과 NPE 펀드 결합 상장 허용(Factor5)이 핵심이다. 일본·싱가포르의 IP 공시 사례는 투자와 경영의 상관관계를 실증했으며, 미국·중국에서는 SPAC-NPE 모델이 IP 유동화와 대규모 자금조달에 효과적 임이 입증되었고, WIPO(2025)도 이를 고급 금융 기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표11 국내외 현황 조사 등을 종합한 국가별 정책 비교>

정책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한국	채택
IP가치평가	◎	◎	◎	영국, 싱가포르, 자메이카	△	◎
IP펀드(민간)	◎			캐나다	△	◎
IP증권화	◎					◎
IP담보대출	◎	◎	◎	영국, 싱가포르	◎	
IP보험(민간)	◎					
IP보험(정부)			◎			
IP보험(하이브리드)		◎				◎
세제혜택				영국		◎
IP공시		◎		싱가포르		

자료조사와 국가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포인트를 바탕으로 Factor를 도출하였으며, 현직 회계사와 지식재산 전문가(Focus Group)의 의견을 반영해 시대에 맞는 추가적인 요소를 발굴하였다. STO(Factor6)의 경우, 2023년 금융위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구체적인 추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AI가 일상화된 현 시대에 맞게 지식재산 기반 토큰 발행을 통해 IP 수익화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유럽·싱가포르의 NEXUS 접근법을 참고한 특허박

스(Patent Box) 도입(Factor7)을 통해 R&D 지출과 IP 소득의 인과관계에 기반한 세율 조정이 기업의 IP 활용을 촉진하고, IP 공시와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12 정책 Factor 도출 결과>

정책	정의
「자산유동화법」 개정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법체계처럼 지식재산 및 로열티에 이르기까지 유동화 자산으로 규정
소버린 IP펀드 조성→ “국가기반 IP펀드법” 제정	양자 등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혁신기술 및 정부 정책성 혁신기술 대상 정부 자금 투자(정부 자금이 앵커로 투입)
민간 IP펀드 세제·규제 인센티브→출자자 세액공제	펀드 출자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민간 자본 유입 촉진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정보 공시, IP공시)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기업의 IP현황과 활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여 정보 비대칭 해소 및 투자자 신뢰도 제고
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연계한 NPE 펀드 상장 허용	NPE 펀드 기반 기업이 SPAC과 병합함으로써 비상장 기업의 상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자 유동성 제공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	P 자산 자체를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및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 민주화 구현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	IP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에 대해 국제 표준인 NEXUS 조정법을 적용하여 10~12%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IP 활용 기업의 세부담 경감
K-NEXI IP 보험 설계	특허 소송, 침해방어, IP 가치 하락 등의 사건성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직접 보전하는 사후 대응 메커니즘
다층적 신용 보강 체계 구축	신용보강, 담보, 보증 등 다층적 장치로 펀드 조성 단계에서 투자자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사전 예방 메커니즘 및 2차 시장·회수시장 구축

### FGI(Focus Group Interview)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표준적 방법론으로, 심리학, 마케팅, 정책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FGI 수행 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출된 이슈와 시장 참여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주제의 전문가 집단을 정의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 그룹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그룹의 적정 인원수는 Guest.G(2017)<sup>41)</sup>의 연구 결론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별 인터뷰어 수 6~8인, 2~3개 포커스 그룹을 적용하여 균질한 IP 정책 전문가 표본(8명)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과정은 홍무궁(2024)의 논문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조사와 콘텐츠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IP 금융 정책 및 인프라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방법과 박성택(2012)이 활용한 “특허가치평가 중요 요인 도출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선행 사례를 근거로 진행되었다. 또한, Hennink & Kaiser (2022)<sup>42)</sup>의 의미 포화도 기준과 Blaschke et al. (2019)<sup>43)</sup>의 3라운드 델파이 표준 설계를 따르며, 목표 포화도 85~90% 이상을 달성하도록 설계하였다.

41) Greg Guest et al., “How Many Focus Groups Are Enough? Building an Evidence Base for Nonprobability Sample Sizes”, *Field Methods*, Vol.29 No.1(2017), pp. 3-22.

42) Monique Hennink & Bonnie N. Kaiser, “Sample sizes for satur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A systematic review of empirical test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292(2022), Article No. 114523.

43) Sarah-May Blaschke et al., “Identifying priorities for cancer caregiver interventions: protocol for a three-round modified Delphi study”, *BMJ Open*, Vol.9 No.2(2019), Article No. e024725.

<표13 FGI 대상자 현황>

분류코드	대표 그룹분야	선정 전문가 주요 특징
FGI-A	금융(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관련 실무 경험 보유</li> <li>○ [증권사] 기업공개 업무 담당 경험 보유</li> <li>○ [민간 IP투자사 대표] IP펀드 운영 경험 및 실제 운영사례 보유, 10년 이상 VC 투자(Series A+) 경험 및 다수 벨류업 사례 보유</li> <li>○ [회계사] 기업 회계 업무 담당 경험 보유</li> </ul>
FGI-B	지식재산/회계(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 조사·분석 관련 정책 분야 경험 보유(20년)</li> <li>○ IP관련 사업운영 경력이 있는 교수</li> <li>○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경험 보유(20년)</li> </ul>

첫 번째 FGI 그룹은 현직 금융계 전문가(증권사, IP 펀드 운영사, 기술보증기금 종사자 등 4인)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주제에 맞춰 금융계 중심으로 분류코드 FGI-A를 부여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지식재산 및 금융 분야 교수와 2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민간·공공기관 종사자 4인)로, 실무·정책 경험을 겸비하였다.

구성된 인터뷰 그룹은 3라운드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먼저, 1라운드에서는 9개 팩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표 간 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해 차원을 나누어 관계를 파악하였다.

<표14 정책 Factor>

정책	작동 메커니즘	정책 레벨	대상	주요특성	정의
Factor1. 「자산유동화법」 개정	법적 정의 확장	제도적 기반 조성 (기반)	법제도	법제도 개정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법체계처럼 지식재산 및 로열티에 이르기까지 유동화 자산으로 규정
Factor2. 소버린 IP펀드 조성→ “국가기반 IP펀드법” 제정	공적자본 기반 펀드 조성	자본공급 - 정부주도 (공급)	IP펀드(국가)	공적자본 투입	양자 등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혁신기술 및 정부 정책성 혁신기술 대상 정부 자금 투자(정부 자금이 앵커로 투입)
Factor3. 민간 IP펀드 세제·규제 인센티브→출자자 세액공제	민간자본 유입 유도	자본공급 - 민간참여 (인센티브)	IP펀드 (민간 출자자)	세액공제 인센티브	펀드 출자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민간 자본 유입 촉진
Factor4.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정보 공시, IP공시)	정보공시 기반 신뢰도 제고	수요창출 - 정보공개 (수요)	기업-투자자	IP공시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기업의 IP현황과 활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여 정보 비대칭 해소 및 투자자 신뢰도 제고
Factor5. SPAC(기업인수목적 회사)과 연계한 NPE 펀드 상장 허용	SPAC 병합을 통한 상장	수요창출 - 유동성 제공 (수요)	(NPE 펀드 기반) 기업 (Exit 대상)	투자자 대상 EXIT 채널 제공	NPE 펀드 기반 기업이 SPAC과 병합함으로써 비상장 기업의 상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자 유동성 제공

Factor6.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거래	거래메커니즘 - 기술혁신 (거래)	IP자산 자체	일반인 소액투자 활성화	IP 자산 자체를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및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 민주화 구현
Factor7.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	세율 우대를 통한 인센티브	세제인센티브 - 소득감면	기업 (인센티브)	NEXUS 조정법 기반 세율 조정	IP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에 대해 국제 표준인 NEXUS 조정법을 적용하여 10~12%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IP 활용 기업의 세부담 경감
Factor8. K-NEXI IP 보험 설계	보험을 통한 사후 손실보전	위험완화 - 손실보전	기업-투자자 (위험관리)	사건성 손실 보장 구조	특허 소송, 침해방어, IP 가치 하락 등의 사건성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 직접 보전하는 사후 대응 메커니즘
Factor9. 다층적 신용 보강 체계 구축	신용보강/담보/보증을 통한 사전 위험감소	위험완화 - 신용도향상	IP (신용 강화 대상 IP) (위험관리)	투자시 선행적 신용보강	신용보강, 담보, 보증 등 다층적 장치로 펀드 조성 단계에서 투자자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사전 예방 메커니즘 및 2차 시장 회수시장 구축

위와 같이 도출된 Factor간의 중복성 검토를 위해 다차원으로 나눠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념적 차별화 포인트를 도출하는 한편 각 차원의 특성 및 정의를 기준으로 차원별 중복성 분석 결과 구조적 중복은 일부 존재하나 Factor 간 중복성이 없음을 확인한 후 FGI 2라운드로 진행하였다.

<표15 Factor 별 중복성 평가 결과>

차원	고유 개수	중복성 평가	주요 내용
작동 메커니즘	9/9	완전 독립	9가지 서로 다른 작동 메커니즘
정책 레벨	6 단계	구조적 중복	정책 사이클: 기반조성 → 공급 → 수요(2) → 거래 → 인센티브(2) → 위험관리(2)
대상	5/9	구조적 중복	법제도, IP펀드(2), 기업-투자자(2), 기업(2), IP자체(2)
주요 특성	9/9	완전 독립	9가지 서로 다른 정책 특성
기술적 정의	9/9	완전 독립	9가지 완전히 상이한 기술적 메커니즘

2라운드에서는 각 정책 레벨의 역할과 Factor 간 시너지 요소를 검토해 9개 Factor를 3가지 상관관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순차적 상관관계(Factor 1→2→3, 상관도 0.70~0.95)는 선행 Factor 성공이 필수 조건이며, 보완적 상관관계(Factor 3↔4, 4↔5, 상관도 0.55~0.75)는 조합 시 상호 효과가 강화되고, 시너지 상관관계(Factor 7↔8↔9, 상관도 0.78~0.82)는 세제 혜택이 보험 수요를 유도하며 3층 구조로 성과가 극대화된다. 이러한 분석은 3단계 인터뷰에서 정책 수립 시 추가 고려사항을 확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3라운드에서는 1·2라운드를 통해 정립된 Factor가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여, 6개 Factor에 대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성적인 의견을 정리하였다.

■ Factor1. 「자산유동화법」 개정

현행법은 라이선스 로열티 채권화나 신탁 구조에 의한 IP ABS만을 허용해 IP 유동화 확대에 제약이 있으므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한 IP 공시 의무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기업의 IP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하여 특허·저작권·상표 등 모든 IP 권리를 명시적 기초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 Factor2. 소버린 IP펀드 조성→“국가기반 IP펀드법” 제정

소버린 IP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기반 IP 펀드법 제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혁신네트워크 법인(INCJ)과 프랑스의 France Brevets처럼 국가 자금이 혁신기업에 전달되고, 기술·특허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Factor3. 민간 IP펀드 세제·규제 인센티브→출자자 세액공제

금융 인프라 측면에서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IP펀드 조성이 필수적이다. “국가기반 IP펀드법” 제정으로 펀드 설립 근거, 출자 비율, 운용사 자격·감독 기준을 명문화하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 보유 IP의 출자·양도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민간 IP펀드에는 출자자 세액공제, SPC 운용보수·성과보수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Factor6.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SPAC을 활용한 NPE 펀드 상장 허용과 STO 제도화가 요구된다. SPAC 설립 시 소송·라이선스 수익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NPE 운용사를 인수 대상에 포함하고, 특허 라이선스 수익증권(PRT)과 로열티 스트림을 증권형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Factor7.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

조세·회계 제도 측면에서는 특허박스 도입을 시급히 추진하고, IP담보대출·보증의 회계처리 지침을 개선해 금융리스 유사 회계처리 및 IP 담보대출 미상환 시 매각차용 옵션 회계인식을 허용해야 한다.

■ Factor9. 다층적 신용 보강 체계 구축

신용보강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므로,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신용보강법으로 일본의 NEXI를 들 수 있다. 일본 NEXI 모델을 벤치마킹한 K-NEXI IP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특허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IP 소송비용 보험 및 재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분쟁 리스크를 완충해야 한다.

### 4.3. 정성분석(FGI) 결과 종합

#### Factor1. 「자산유동화법」 개정

전문가들은 ‘자산유동화법’ 개정이 IP 금융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라고 평가했으며, 특히 법률 조문의 구체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투자자가 참여 가능한 IP 기반 펀드 및 리츠형 상품(STO 유사 구조)의 시장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기술유동화 전반을 다루기 위해 특허법·상표법·부동산등기법 등 연계 법률의 체계적 개정을 병행해야 하며, SPV의 IP 취득·관리 절차를 명시하고 유동화된 IP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실무적 장애를 제거하고 시장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언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 참여자의 실질적 수요와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 마련이 긴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향후 정책 설계 및 제도 정비에 있어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반영할 주요 방향이 될 것이다.

#### Factor2. 소버린 IP펀드 조성→ “국가기반 IP펀드법” 제정

전문가들은 모태펀드 및 정책자금을 통해 대규모 IP 투자 생태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단순 소버린 IP펀드 조성보다 투자와 세제·보증·보조금·공시 의무 등 다양한 정책지원 수단을 포괄하는 “국가기반 IP펀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 법률은 정책의 포괄성과 실효성을 높여 금융상품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입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시행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핵심 지원책을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또한 펀드 상품 개발 시 정부 출자와 한국투자공사(KIBO), KDB,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및 민간 출자를 결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기금·보험사 등 장기 자금을 유치할 기반을 조성해야 실질적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제언하였다.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면 IP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고 국내 IP 금융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 역시 수집되었다.

#### Factor3. 민간 IP펀드 세제·규제 인센티브→출자자 세액공제

FGI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민간 IP펀드 출자자 세액공제가 IP 금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실질적 세금 절감, 투자 제한 완화, 신규 자금 유입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세액공제로 인한 국가 재정 수입 감소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중소·벤처기업 출자에 한정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대상 및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과세당국의 이견이 없을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회원이 투자하고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용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출자자의 단기 투기성 투자 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투자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Factor4.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FGI 조사 결과, 기관투자자의 IP 투자 한도 확대 및 IP 투자상품의 투자 적격성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연기금·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과도한 추가 규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중복 규제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IP 공시제도의 운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공시제도를 활용할 때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하며, 공시로 인한 영업비밀 누출 위험을 방지할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거래소 상장심사 및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IP 이슈가 상장기업의 사업 실현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거래소가 개선하는 실사 항목과 관련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IP 공시 강화 효과를 높여야 한다. 넷째, 특허·상표·저작권 등 IP 현황과 이를 매출·수익·시장점유율 등 기업 성과 지표와 연계한 정량·정성 공시를 통해 대중의 IP 인식을 제고하고 투자분석을 활성화할 수 있으나, 공시 확대가 법적분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향후 긍정·부정 영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Factor5. 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연계한 NPE 펀드 상장 허용**

FGI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SPAC을 통한 NPE 펀드 상장을 적극 육성할 정책으로 평가하면서, 특허 소송 중심의 사업모델로 전환되어 기술혁신보다는 소송 전문화로 치우칠 위험을 방지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PE 운용사를 SPAC 인수대상으로 명시할 경우 IP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IP 확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기술 상용화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NPE 결합을 통해 Exit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 및 기술혁신 균형을 위한 규제적 안전장치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

#### **Factor6.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

FGI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STO) 발행이 IP 자산 디지털화를 통해 소액·글로벌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IP 금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STO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공시 체계 법제화와 연계하여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관련 법안이 재정정되어 입법 추진 중인 만큼, STO 발행을 위해 금융업계와 협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지원사업을 활용해 IP 보유 기업이 자체 IP를 SPV에 신탁한 뒤 실시로 일부를 계약하는 구조를 도입하여 'IP의 실질적 자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또한 MZ세대 등 디지털 자산 친화적 투자자층을 유입하기 위해 단일 IP뿐만 아니라 다수 IP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상품 가치를 높이고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 **Factor7.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

FGI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할 경우 IP 기반 소득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R&D 투자 유인과 기업 유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제도 설계를 보다 정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로열티 기초수익 산출 방법, 기술유동화 연계 기준, IP 매입 시점별 세액 감면 한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출 근거 데이터를 정부·산업계가 공동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낮은 세율 적용 인센티브가 기술이전·사업화 로열티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로열티 수익 추적·보고 체계를 구축해 관련 기술유동화 상품과 연계하는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특허박스의 효과는 기존 제도가 충분히 자리 잡은 이후 활성화 정체 시점에 보완적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Factor8. K-NEXI IP 보험 설계**

FGI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K-NEXI 모델을 벤치마킹한 IP 분쟁·수출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지식재산공제 서비스와 연계해 IP 활용 단계별 보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료를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설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IP 무효화·라이선스 해지 등 가치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는 별도 보험상품 확대와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지원 등 정책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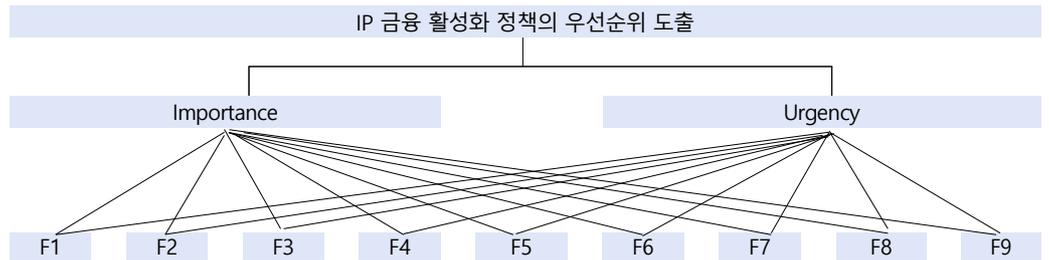
### Factor9. 다층적 신용 보강 체계 구축

FGI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다층적 신용보강 체계 구축이 IP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공공기관 보증, 기업 내부 준비금·초과담보, 구조화·지급보증 등의 개별 신용보강 제도가 구현되어 있으나 활용도가 낮아, 보험 추가를 포함한 신용보강체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각 제도별 리스크 완화책을 우선 보강한 후 이를 종합·연계해 다층적 신용보강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4.4. 정량분석(AHP) 결과 종합

연구방법론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AHP는 FGI를 통해 도출된 9개의 IP Factor의 정책 수행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평가를 하기위한 3계층 구조로 설계되었다.

- 1계층(목표): IP 금융 활성화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 2계층(평가기준): 중요성(Importance)과 시급성(Urgency)
- 3계층(대안): IP 금융 정책 요인



먼저, 중요성을 기준으로 AHP를 실시한 결과, 가중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Factor1>Factor3>Factor4>Factor2>Factor5>Factor9>Factor6>Factor7>Factor8 순으로 결과도 도출되었으며, Consistency Index(CI) 0.0132(<0.1), Consistency Ratio(CR) 0.0163으로 모두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표16 중요성 기준 쌍대비교>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	1.0	2.2	1.4	1.7	1.2	1.8	2.4	2.6	1.8
F2	0.5	1.0	0.5	1.0	1.8	1.3	1.5	1.7	1.5
F3	0.7	1.8	1.0	1.1	1.6	1.8	2.1	2.3	2.5
F4	0.6	1.0	0.9	1.0	1.8	1.6	1.6	1.7	1.6
F5	0.8	0.5	0.6	0.6	1.0	1.3	1.5	1.6	1.3
F6	0.6	0.8	0.6	0.6	0.8	1.0	0.9	1.1	0.9
F7	0.4	0.7	0.5	0.6	0.7	1.1	1.0	1.0	0.7
F8	0.4	0.6	0.4	0.6	0.6	0.9	1.0	1.0	0.6
F9	0.6	0.7	0.4	0.6	0.8	1.2	1.4	1.7	1.0

두 번째, 시급성을 기준으로 AHP를 실시한 결과, 가중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Factor3>Factor1>Factor2>Factor4>Factor5>Factor9>Factor6>Factor7>Factor8 순으로 결과도 도출되었으며, Consistency Index(CI) 0.0174(<0.1), Consistency Ratio(CR) 0.0216으로 모두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표17 시급성 기준 쌍대비교>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	1.0	2.6	0.9	1.7	1.2	1.6	2.1	2.2	1.4
F2	0.4	1.0	1.0	0.9	1.8	1.4	1.7	1.7	1.8
F3	1.1	1.0	1.0	1.6	1.7	1.9	2.2	2.4	2.6
F4	0.6	1.1	0.6	1.0	1.7	1.8	1.6	1.8	1.6
F5	0.8	0.5	0.6	0.6	1.0	1.2	1.4	2.0	1.2
F6	0.6	0.7	0.5	0.6	0.8	1.0	0.9	1.2	0.9
F7	0.5	0.6	0.5	0.6	0.7	1.1	1.0	1.4	1.0
F8	0.4	0.6	0.4	0.6	0.5	0.9	0.7	1.0	0.6
F9	0.7	0.5	0.4	0.6	0.8	1.1	1.0	1.7	1.0

**가중치 결과에 대한 일관성 검증**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일관성 검증을 위해 가중치의 합과 CR, CI를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 가중치는 모두 일관성 있게 도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8 AHP 결과>

	정책 요소(Factor)	중요성		시급성	
		Weight	Rank	Weight	Rank
1	「자산유동화법」 개정	0.18	1	0.17	2
2	소버린 IP펀드 조성→“국가기반 IP펀드법” 제정	0.12	4	0.13	3
3	민간 IP펀드 세제·규제 인센티브→출자자 세액공제	0.16	2	0.17	1
4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정보 공시, IP공시)	0.13	3	0.13	4
5	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연계한 NPE 펀드 상장 허용	0.10	5	0.10	5
6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	0.08	7	0.08	7
7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	0.07	8	0.08	8
8	K-NEXI IP 보험 설계	0.07	9	0.06	9
9	다층적 신용 보강 체계 구축	0.09	6	0.08	6
일관성 검증	CR	0.01		0.02	
	CI	0.02		0.02	
	가중치 합	1		1	

AHP를 활용해 ‘IP 금융 시장 활성화’라는 최상위 목표 아래 중요도와 시급성 두 기준을 설정하고, 9개 대안을 상대적 쌍대비교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법제도 정비 과제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중요도 0.1806, 시급성 0.1680)과 민간 IP펀드 출자자 세액공제(0.1634, 0.1683)가 최우선 순위로 식별되었다. 이는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 유인 확보가 IP 금융 확장의 기폭제

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0.1304, 0.1280)와 국가기반 IP펀드법 제정(0.1164, 0.1283)이 중장기적 생태계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확인되었고, SPAC 연계 NPE 펀드 상장(0.1013, 0.0998), 다층적 신용 보강 체계 구축(0.0871, 0.0839), STO 발행 허용(0.0804, 0.0813), 특허박스 도입(0.0734, 0.0794), K-NEXI IP 보험 설계(0.0671, 0.0631) 순으로 가중치가 분포되었다. 특히, 가중치의 일관성 지표(CR)가 0.1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AHP 이론에서 제시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신뢰수준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법·제도 개편과 세제 인센티브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자본시장·신용 보강·디지털 자산화·보험 등 보완 수단을 단계별로 도입하는 정책 로드맵이 IP 금융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FGI를 통해 수집된 전문가 의견과 AHP 분석을 결합하여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와 실행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정성분석 결과, 법제도 정비(Factor 1: 자산유동화법 개정, Factor 2: 국가기반 IP펀드법 제정)와 세제·보조금·공시 등 정책지원 수단 확대(Factor 3: 출자자 세액공제)가 시장 환경 조성의 핵심으로 도출되었으며,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Factor 4: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혁신적 자금조달 수단 도입(Factor 5: SPAC 연계 NPE 펀드 상장, Factor 6: STO 발행), 기술가치 평가 기반 조성(Factor 7: 특허박스 도입, Factor 8: IP 보험 설계), 신용보강 체계 구축(Factor 9)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정책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AHP 정량분석에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중요도 0.1806, 시급성 0.1680)과 ‘민간 IP펀드 출자자 세액공제’(0.1634, 0.1683)가 최우선 과제로 확인되어,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유인 마련이 IP 금융 확장의 기폭제임을 실증하였다. 이어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0.1304, 0.1280)와 ‘국가기반 IP펀드법 제정’(0.1164, 0.1283)이 중장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대안은 시장 안정화 및 디지털 자산화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일관성비율(CR)이 0.1 미만으로 분석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쌍대비교에 기반한 가중치 산출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추가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결과 의 신뢰도를 재차 검증하였다.

이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 설계는 3단계에 걸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1단계에서는 법·제도 개편과 세제 인센티브를 우선 추진하되 시행령·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단기적 지원책을 병행하고, 2단계로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및 혁신적 자금조달 수단 도입은 투자자 보호장치와 정보 공시 체계를 병행 구축함으로써 리스크를 완화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디지털 자산화(STO)와 보험·ABS 모델 등 신기술 기반 수단을 단계별로 도입해 시장 다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표19 단계별 정책 추진 로드맵>

Factor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1 「자산유동화법」 개정						
2 소버린 IP펀드 조성→“국가기반 IP펀드법” 제정						
3 민간 IP펀드 세제·규제 인센티브→출자자 세액공제						
4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정보 공시, IP공시)						
5 SPAC와 연계한 NPE 펀드 상장 허용						
6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						
7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						
8 K-NEXI IP 보험 설계						
9 다층적 신용 보강 체계 구축						

Phase1
  Phase2
  Phase3

정량분석과 정성분석 결과 및 국내 현황과 법안 발의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때 총 3단계에 걸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IP 금융활성화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9가지 정책 Factor는 6년에 걸쳐 추진하되, 3단계로 나뉘서 추진할 경우 정책 추진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Phase1(1단계: 기반구축)**

Factor 1- Factor 3 -Factor 4 병렬 추진으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유동화법」개정을 시장으로 민간 IP펀드가 활발하게 IP 금융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출자자 대상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이들이 신뢰도 있는 정보인 IP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IP공시와 같은 정보 공시 구조 변경으로 자본시장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미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Stiglitz & Weiss(1992)<sup>44)</sup>의 정보 비대칭 이론에 따르면, 신용 시장에서 정보 투명성의 부재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한다. 따라서 IP 자산 금융화의 초기 단계에서 정보 투명성· 신뢰성· 객관성은 삼위일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Beck et al.(2006)<sup>45)</sup>의 금융시장 발전 단계 이론에 따르면, 신흥 금융 시장의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며, 이는 이후의 자본 조성 채널 확대와 시장 고도화의 필수 선행조건이다. 또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2024년 IP 금융화 보고서<sup>46)</sup>는 IP 자산의 금융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1) IP 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체계, (2) 기업의 IP 보유 현황에 대한 공시 기준, (3)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1단계 구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Phase2(2단계: 자본 채널 확대)**

자본 조성 채널을 다층화하기 위해 Factor 2-Factor 5- Factor 6을 순차-통합적으로 추진

44) Joseph E. Stiglitz & Andrew Weiss, “Asymmetric Information in Credit Markets and Its Implications for Macro-Economics”, *Oxford Economic Papers*, Vol.44 No.4(1992), pp. 694-724.

45) Thorsten Beck, *Creating an Efficient Financial System: Challenges in a Global Economy*, World Bank, 2006, pp. 1-43.

46)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Moving IP Finance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WIPO Reference RN2025-7EN, WIPO, 2025, pp. 1-20.

해야 한다. 정부 주도 펀드의 선행은 초기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F2:소버린IP펀드 조성), 이를 바탕으로 민간 참여(F5: SPAC-NPE 펀드, F6: STO)와 거래 채널 확장을 병행한다. 이 단계의 구성은 신생 자본시장 발전 이론 및 정책 상호작용 연구에 부합하며, 규제 샌드박스에서 도출된 정책 요구를 STO 거래소 구축에 즉시 반영하는 유연성을 확보한다. 국제 비교 연구(WIPO, 국제금융기구 보고서, OECD Policy Note<sup>47)</sup>) 역시 공공-민간 협력의 시너지를 강조한다. WEF2025 Report<sup>48)</sup>에서 선언한 “조용한 혁명”은 Tokenization이 단순 기술혁신을 넘어선 금융시스템 현대화의 필수 구성요소이며 폭발적으로 자본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도구임을 보고서 내용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다. 특히, 지식재산 STO발행은 아직 실행하는 국가가 없지만 AI의 발전속도와 함께 빠른 속도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OECD의 국제 사례 연구 및 WEF의 토큰화 권고는 Phase2에서 제안하는 이들 정책의 국제적 정합성을 강화한다.

### Phase3(3단계: 지속 가능 IP 금융 시스템 구축)

Factor 7-Factor 8-Factor 9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IP 금융 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속가능성을 달성한다. 이는 특허박스로 IP보유 기업의 IP 수익(로열티 수익포함)에 대한 세후 재무적 여건을 개선하고, IP보험을 통해 사건성 손실의 방어력을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다층적 신용보강 체계로 신용 접근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3단계에서는 각 Factor를 순차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며, 3단계의 순차적 추진은 Thelen의 정책 누적효과(Policy Accumulation Effect) 이론으로 설명된다. 특히 C Adam<sup>49)</sup> 과 Christoph Knill(2020)<sup>50)</sup>은 Thelen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직적 정책-프로세스 통합(VPI)을 통해 정책 축적을 보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정책 축적은 사회의 현대화와 진보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특허박스 도입으로 축적된 기업의 IP거래 및 활용 실적 등과 같은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세수 확보 등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확인하고 IP보험 설계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다층적 신용보강 체계를 구조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므로, 순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3단계 6년 추진 전략의 핵심 가치는 다음 세 가지에 있다.

첫째, 정책 간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IMF Working Paper(1977)<sup>51)</sup> 주요 내용인 정책 보완성(Policy Complementarity) 연구에 따르면, “정책 간 상호 보완성이 단일 정책의 경제 효과보다 2~3배 크다.(주요 내용: 정책 1개만 가지고 있을 경우 성장 확률 0.2~0.35→세가지 핵심 정책 영역에서의 성공 확률 0.55~0.9)”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단계의 기초 인프라(신용평가, 공시, 가치평가)가 완성되었을 때, 2단계의 자본 조성 채널들(소버린펀드, STO)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2단계의 성공 실적이 축적되었을 때 3단계 정책(특허박스, 보험, 신용보강)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효과가 극대화될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단계적 시장 신뢰도 확보: IMF Fintech Notes 2025<sup>52)</sup>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금융 혁신 정책의 성공 요인은 초기 시장 신뢰도의 단계적 구축에 있다.” 1단계의 투명한 평가 기준

47)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Understanding the Tokenisation of Assets in Financial Markets”, OECD Going Digital Toolkit Policy Note, OECD, 2021, pp. 1-37.

48) World Economic Forum (WEF), “Asset Tokenization in Financial Markets: The Next Generation of Value Exchange (Insight Report)”, WEF, 2025, pp. 1-63.

49) Christian Adam, *Policy Accumulation and the Democratic Responsiveness Trap*,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pp. 1-236.

50) Christoph Knill et al., “Balancing Trade-Offs between Policy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The Impact of Vertical Policy-Process Integration on Policy Accumul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81 No.1(2021), pp. 157-160.

51) Jahangir Aziz & Robert F. Wescott, “Policy Complementarities and the Washington Consensu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pp. 1-20.

52) Hervé Tourpe & John Kiff, “Fintech Notes 2025”, *Fintech Notes*, Vol.2025, No.5(2025), p. 1-38.

→ 2단계의 정부 주도 수요 창출(소버린펀드) → 3단계의 정책 간 시너지 효과라는 순서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WEF 2025년 보고서도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러한 단계적 신뢰도 구축이 장기적 시장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셋째,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아시아 선도국 지위 확립: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등이 공동으로 발행한 보고서(2024)<sup>53)</sup>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금융 혁신 정책 비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IP 금융화 전략은 싱가포르(MAS Project Guardian, 금융 선진국), 홍콩(스테이블코인법, HKMA), 일본(지급결제법 개정, Payment Services Act and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과 비교할 때, 체계적 단계별 추진과 IP 자산의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미 디지털 자산 혁신을 제도화하는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금융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9개 팩터의 우선순위는 OECD 국가들의 IP 금융화 정책 전개 순서와 일치하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3단계 6년 전략은 한국의 IP 금융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2030년까지 아시아 토큰화 시장의 선도국 지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콘텐츠, K-게임, K-뷰티 등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있는 IP 자산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본을 조성하고, 국제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한국이 단순한 IP 금융 시스템 도입국에서 글로벌 IP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FGI(Focus Group Interview)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론을 결합하여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용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방법론상 제약으로 FGI 진행 시 정부·금융기관 그룹과 학계·산업 그룹 등 2개 그룹으로 제한되어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IP 보유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IP 보유 기업은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정부나 금융기관과 상이한 관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IP 기업을 독립적인 그룹으로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패널의 다수가 IP 금융 정책수행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 종사자이긴 하나 내밀한 기관 정보나 데이터 오픈에 한계가 있어, 본 연구는 WEF, IMF 등 국제기구의 정책 보고서와 이론적 선행연구에 주로 의존하여 실제 정책 시행 사례의 세부 데이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정책 실현 시 한국 시장의 구체적인 예상 규모 및 기준선(baseline)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 또한 존재한다. 특히 STO와 같은 금융 혁신 정책은 아직 완전히 구현된 선진국 사례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2~3년 후, 후속 연구에서는 싱가포르(MAS Project Guardian), 홍콩(스테이블코인법), 일본(지급결제법 개정), 스위스(블록체인 규제) 등 4개 국가의 기반구축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향후 이들 국가에서 STO 정책이 시행될 경우 후속연구를 통해 성공요인과 정책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후속 연구들이 누적되면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 규모

53) Asia Securities Industry &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ASIFMA) et al., “The Impact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Capital Markets: Ready for Adoption, Time to Act”, ASIFMA, <<https://www.asifma.org/wp-content/uploads/2025/09/full-report-dlt-report-final3.pdf>>, 검색일: 2025. 10. 15.

별·산업별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금융기관·투자자)의 실증조사와 국제 사례 분석을 통합하고, 정책 시행 후 성과를 추적·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한국의 IP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한층 심도있는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단행본(서양)

- Christian Adam, *Policy Accumulation and the Democratic Responsiveness Trap*,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Garry Anderson & Nancy Arsenault, *Fundamentals of Educational Research*, Routledge, 2005.
- Mariana Mazzucato, *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ublic vs. Private Sector Myths*, Anthem Press, 2013.
- Richard A. Krueger & Mary Anne Casey, *Focus Group: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5th Edition, Sage Publishing, 2015.
- Thorsten Beck, *Creating an Efficient Financial System: Challenges in a Global Economy*, World Bank, 2006.

### 학술지(국내 및 동양)

- 서효원,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활용한 학부생의 학술적 보고서 작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101집(2023).
- 이지연, “유동화를 통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주간금융브리프』, 30권 8호(2021).
- 전우정, “지식재산에 대한 담보권설정과 자산유동화 - 특허권을 대출에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괄담보”, 『한국민사법학회』, 제105호(2023).
- 조승국·이주석, “퍼지-계층화 분석법을 적용한 서울시의 쾌적성(Amenity)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가중치 도출”, 『서울도시연구』, 7권 1호(2006).
- 주부식·김민철,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18집(2007).

### 학술지(서양)

- Christoph Knill et al., “Balancing Trade-Offs between Policy Responsiveness and Effectiveness: The Impact of Vertical Policy-Process Integration on Policy Accumul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81 No.1(2021).
- Dov Solomon & Miriam Marcowitz-Bitton,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ization”, *Cardozo A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33(2015).
- George A.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84 No.3(1970).
- George A. Miller,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some limits on our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63(1956).
- Greg Guest et al., “How Many Focus Groups Are Enough? Building an Evidence Base for Nonprobability Sample Sizes”, *Field Methods*, Vol.29 No.1(2017).
- Hervé Tourpe & John Kiff, “Fintech Notes 2025”, *Fintech Notes*, Vol.2025, No.5(2025).
- Joseph E. Stiglitz & Andrew Weiss, “Asymmetric Information in Credit Markets and Its Implications for Macro-Economics”, *Oxford Economic Papers*, Vol.44 No.4(1992).
- Lennart Ante & Ingo Fiedler, “Cheap Signals in Security Token Offerings (STOs)”, *Quantitative Finance and Economics*, Vol.4 No.4(2020).
- Monique Hennink & Bonnie N. Kaiser, “Sample sizes for satur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A systematic review of empirical test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292(2022).
- Ram T. S. Ramakrishnan & Anjan V. Thakor, “Information Reliability and a Theory of Financial Intermediation”,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51 No.3(1984).
- Rana Muhammad Dilshad & Muhammad Ijaz Latif, “Focus Group Interview as a Tool for Qualitative Research: An Analysis”, *Pakist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33 No.1(2013).
- Sarah-May Blaschke et al., “Identifying priorities for cancer caregiver interventions: protocol

for a three-round modified Delphi study”, *BMJ Open*, Vol.9 No.2(2019).

Thomas L. Saaty & E. Erdener, “A New Approach to Performance Measurement -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Design Methods and Theories*, Vol.13 No.2(1979).

## 신문기사

김예솔, 「IP담보대출 부실률 4%·재산권 매입 늘린 특허청도 ‘진땀’», 서울경제, 2025. 9. 3자.

김태현, 「IP 금융 10조 시대? 직접투자 펀드 1.7% 불과·제도개선 시급», 머니투데이, 2024. 7. 9자.

## 인터넷자료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K-IFRS, <<https://kifrs.com>>, 검색일: 2025. 10. 15.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2021[지식재산추진계획 2021]”, 知的財産戦略本部,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akaku20210713.pdf>>, 검색일: 2025. 10. 15.

일본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Japan’s Corporate Governance Code [Final Proposal]”, FSA, <[https://www.fsa.go.jp/en/laws\\_regulations/pc\\_corporate\\_governance.html](https://www.fsa.go.jp/en/laws_regulations/pc_corporate_governance.html)>, 검색일: 2025. 10. 15.

Asia Securities Industry &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ASIFMA) et al., “The Impact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Capital Markets: Ready for Adoption, Time to Act”, ASIFMA, <<https://www.asifma.org/wp-content/uploads/2025/09/full-report-dlt-report-final3.pdf>>, 검색일: 2025. 10. 15.

Avon River Ventures, “Recent Transactions [최근 거래 내역(공개건 기준)]”, Avon River Ventures, <<https://avonriverventures.com/recent-transactions/>>, 검색일: 2025. 10. 15.

Development Bank of Japan (DBJ), “日本初の本格的な「知財開発ファンド」を創設 ~IPBの特許解析システムを活用し、有望・休眠特許の事業化を促進~[일본 최초의 본격적인「지재 개발 펀드」를 창설: IPB의 특허 해석 시스템을 활용해, 유망·휴면 특허의 사업화를 촉진]”, DBJ 日本政策投資銀行, <<https://www.dbj.jp/news/archive/rel2006/0822.html>>, 작성일: 2006. 8. 22.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EDINET (Electronic Disclosure for Investors’ NETwork)”, EDINET T, <<https://disclosure2.edinet-fsa.go.jp/WEEK0010.aspx>>, 검색일: 2025. 10. 15.

Japan Exchange Group (JPX), “Japan’s Corporate Governance Code”, Tokyo Stock Exchange, 2021, <<https://www.jpx.co.jp/english/news/1020/b5b4pj0000046kxj-att/b5b4pj0000046l0c.pdf>>, 검색일: 2025. 10. 15.

Japan Patent Office (JPO), “知財ビジネス評価書 (基礎項目編) 作成の手引き[令和6年3月改訂版][지식재산비즈니스 평가서(기초 항목 편) 작성 가이드]”, JPO, <<https://www.jpo.go.jp/support/chusho/document/kinyu-katsuyo/tebiki.pdf>>, 검색일: 2025. 10. 15.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NEXI), “知的財産権等ライセンス保険 (知財保険) [지식재산권등 라이선스 보험(지재보험) 브로슈어]”, NEXI, <[https://www.nexi.go.jp/product/booklet/pdf/pr11\\_01.pdf](https://www.nexi.go.jp/product/booklet/pdf/pr11_01.pdf)>, 검색일: 2025. 10. 15.

Tokyo Stock Exchange (TSE), “Timely Disclosure Information”, Japan Exchange Group, <<https://www2.jpx.co.jp/tseHpFront/JJK020010Action.do?Show=Show>>, 검색일: 2025. 10. 15.

## 연구보고서

박용린, “무형자산의 부상과 기업금융 수요의 변화(이슈보고서 18-13)”, 자본시장연구원, 2018.

박현 외 3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0.

손수정, “지식재산의 증권화(Securitization)를 위한 탐색연구(정책연구 2007-0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임소진 외 9인, “지식재산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성과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5.

Itai Agur et al., “Tokenization and Financial Market Inefficienci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5.

- Jahangir Aziz & Robert F. Wescott, "Policy Complementarities and the Washington Consensu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Understanding the Tokenisation of Assets in Financial Markets", OECD Going Digital Toolkit Policy Note, OECD, 2021.
- World Economic Forum (WEF), "Asset Tokenization in Financial Markets: The Next Generation of Value Exchange (Insight Report)", WEF, 2025.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Expert Consultative Group on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WIPO, 2023.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Moving IP Finance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WIPO Reference RN2025-7EN, WIPO, 2025, pp. 1-20.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World Intangible Investment Highlights", WIPO, 2025.

### 기타자료

- 남시은·박찬경, "뮤직카우를 통한 음원 조각투자: 창작자의 재투자를 위한 투자 민주화 또는 문화 생산의 금융-플랫폼화",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5.
- 정희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비재무정보 공시 활성화의 필요성", 자본시장포커스(2025-15호), 자본시장연구원, 2025.
- Joseph E. Stiglitz, "The Role of the State in Financial Markets", Proceedings of the World Bank Annual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93, 1994.
- Pengfei Han & Zhu Wang, "Technology Adoption and Leapfrogging: Racing for Mobile Payments", SSRN Electronic Journal, 2021.